

“자원순환형 사회를 선도하는”



한국건설자원협회

수신자 각 지회장 및 대표이사
(경유)

참 조 사무국장

제 목 「건설폐기물법 위반사실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 제정·시행 알림



배출자 또는 중간처리업자의 건설폐기물법 위반사실 공표제도 도입('24.3.15)에 따라 공표대상 및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예고 되었던 「건설폐기물법 위반사실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가 아래와 같이 제정·공포(환경부고시 제2025-7호, 시행일 : '25.1.13)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□ 주요내용

구분	주요내용
공표 대상선정 (제4조 및 별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「건설폐기물법」 제56조의3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-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-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에 따른 징역형 또는 벌금형 - 제6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 <p>※ 단, 과태료 처분(법 제66조제1항 관련)의 경우 동일한 행위로 2차 이상 위반하여 가중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공표 가능</p>
공표 절차 및 기간 (제5조 및 제6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매년 1월 말, 전년도 위반 및 처분 관련 자료 취합 →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심의 및 공표 당사자 의견제출 ▶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년 4월 30일부터 1년간 게시
공표대상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(부칙 제2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2025년 공표대상) '24.3.15~12.31일까지의 위반사실을 대상으로 '25.4.30일부터 1년간 게시 ▶ (2026년 이후 공표대상) 전년도 1.1일부터 12.31일까지의 위반사실을 대상으로 당해연도 4월 30일부터 1년간 게시

붙임 「건설폐기물법 위반사실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 1부(협회 홈페이지 참조) 끝.

한국건설자원협회 회장



01/13

주임 **염경미** 팀장 **권병문** 부장 **강한서** 사무총장 **조정환** 회장 **박하준**

협조자

시행 정책기획부-21 (2025. 1. 13.) 접수

우 06752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27길 2 (양재동, 일동홀딩스(주)사옥) 3층 / <http://www.koras.org>

전화 02-2046-5923 전송 02-3476-8464 / cped2110@koras.org / 공개